

의안번호	제 207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 영 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5월 31일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207
----------	-----

발의연월일: 2019년 5월 31일

발의자: 김영주, 이숙애, 서동학,  
박성원, 이의영, 임기중  
황규철의원

##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가. 재위탁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4항, 제5항)

다. ‘재위탁의 금지’ → ‘제3자 위탁 금지’ 로 변경함(안 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조직관리팀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47호

2019. 5. 21. ~ 2019. 5. 28.(특이의견 없음)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18조의 제목 “(재위탁의 금지)” 를 “(제3자 위탁 금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p> <p>① (생략)</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u>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u></p> <p><u>&lt;신설&gt;</u></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u>&lt;단서 삭제&gt;</u></p> <p>④ <u>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u></p>

현행	개정안
<p>제18조(재위탁의 금지) (생략)</p>	<p><u>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u></li> <li>2. <u>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u></li> <li>3. <u>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u></li> </ol> <p>제18조(제3자 위탁 금지) (현행과 같음)</p>

# 관계 법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등)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4.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중 “재위탁”에 관한 용어 정의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수반되지 않음